보도자료

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

[2021헌가19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]

[선고]

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, 의료급여 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57호로 개정된 것) 제11조의5 제1항 중 '의료법 제33조제2항'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, 위 법률조항은 2025. 6. 30.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. [헌법불합치(계속적용]]



2024. 6. 27. 헌법재판소 공보관실

█ 사건개요

- 제청신청인은 요양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.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 여받아 의료기관을 운영(이하 이러한 의료기관을 편의상 '사무장병원'이라 한 다)하였다고 보고, 이러한 수사결과를 경산시장에 통보하였다. 이에 경산시장 은 의료급여법 제11조의5,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 대 하여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다.
- 청구인은 위 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, 위 소송 계속 중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. 제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.

┛ 심판대상

○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급여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57호로 개정된 것) 제11조의5 제1항 중 '의료법 제33조 제2항'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.

[심판대상조항]

의료급여법(2015, 12, 29, 법률 제13657호로 개정된 것)

제11조의5(급여비용의 지급 보류) ① 제1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「의료법」 제33조 제2항 또 는 「약사법」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
__ 결정주문

○ 의료급여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57호로 개정된 것) 제11조의5 제1항 중
'의료법 제33조 제2항'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 위 법률조항
은 2025. 6. 30.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.

🔛 이유의 요지

1.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

○ 심판대상조항은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, 의료급여기금 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다. 그렇다면 사무 장병원일 가능성이 있는 의료급여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급여비용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를 두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 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.

2.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

- 심판대상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·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의료급여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.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, 지급보류 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 자체는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.
- 그런데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,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사정변경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.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, 지급보류처분의 '처분요건'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'지급보류처분의 취소'에 관하여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고, 그 '취소사유'는 '처분요건'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되어야 한다.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한 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. 나아가, 앞서 본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, 이와 함께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.
- 이러한 사항들은,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,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.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,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.

- 다만, 위와 같은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고,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, 지급 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 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관하여는,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.
-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.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5. 6. 30.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.

┛ 결정의 의의

- 헌법재판소는 2023. 3. 23. 2018헌바433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(2020. 12. 29.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것)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'의료법 제33조 제2항'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2024. 12. 31.을입법시한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고, 위 결정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이 2024. 2. 20. 법률 제20324호로 이루어져 2024. 8. 21. 시행될 예정이다. 이 사건은, 의료급여법에 대하여도 위 사안의 취지가 유효하다고 보아,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이다.
-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을 2025. 6. 30.까지 개정하여야 하고, 위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5. 7. 1. 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.